國立公園의 管理體系 改善

요사이 國立公園의 管理業務를 建設部가 繼續 管理할것이냐 아니면 山林廳 혹은 環境處가 맡아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하여 當局에서 檢討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各部署가 나름대로 自己部署에서 맡아해야한다는 當爲論을 當局에 開陳한것으로 듣고 있다.

이곳에서 外國의 例를 꼭 들을 必要는 없겠지만 大部分의 國家는 自然資源을 다루는 山林部署가 管掌하는 곳이 많다. 西獨, 美國, 프랑스, 南美諸國, 스웨덴, 泰國, 카나다, 인도네시아등 大部分의 나라가 山林部署에서 管掌하고 있는것이 現實이다.

스위스, 日本, 台灣등 一部 몇개 國家에서는 例外가 있지만 이나라들의 國立公園은 山이 占有하는 面積이 적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國立公園中 海上公園을 除外한 陸地公園 總379千ha中 山林面積이 337千*ha*로서 陸地面積의 89%를 占함으로서 大部分이 山林인 것이다.

이中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1千*ha*가 私有林이다. 앞으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産業化過程에서 오는 公害問題와 國民레저需要를 爲하여 國立公園은 擴大一路에 있고 우리도 將次는 全國土의 公園化를 試圖해야할 形便에 있다. 이에따라 國有林이던 私有林이던간에 公園에 들어간 이 山林을 經濟的利用과 公益的利用을 如何히 調知하느냐 하는것이 오늘의 當面한 公園問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獨逸이나 美國같은데서는 公園이라 할지라도 合自然的인 適切한 山林施業을 해 나가게 함으로서 林産物도 生産하고 自然生態系의 維持로 公益目的도 最大限 發揮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至極히 林業技術이 隨伴된것임으로 山林部署가 맡아야 옳게 管理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公園으로 指定이되면 山林施業이 事實上 禁止狀態에 있어 所有權行事가 停止된것이나 다름없는 狀態이고 그렇다고 自然公園法에 補償規定이 있던것도 아니다.

數拾年間 막대한 資金을 投入하여 造林한 山을 아무 保償없이 내주어 名儀만으로만 山主노릇을 하고 있고 山主인 自身이 公園(自己山)에 들어가려고 해도 入場料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것이 오늘의 現實이고 이런등 山林施業의 모순은 가뜩이나 造林投資 意慾을 低下시키는 要因으로 加重되고 있다.

私有財産을 아무런 補償없이 所有權 行使를 못하도록 하는 事例는 自然公園法 以外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어 이것은 대단한 民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問題는 現在 山林廳에서 旣往에 國特會計로 私有林을 買收하여 國有林을 擴大하고 있음으로 그 一環事業으로 國立公園에 編入된 私有林을 政府가 買入하

여야만 한다.

그리고 國有林의 造林貸付林도 編入된 林地는 그동안 造林投資한 應分의 代價는 補償을 해야 마땅하다.

以上과 같은 諸問題點을 감안할때 國立公園面積의 대부분이 山林이고 또 많은 公園에 編入된 山林을 經濟性과 公益性을 調和있게 다루는것은 지극히 山林國有의 專門技術問題라는 點과 또 公園指定地의 補償을 위한 法律問題등이 山林을 專門으로 評價할 수 있어야 可能하다는點 또 外國에서도 特殊한 例外의 나라가 있지마는 公園管理는 山林部署가 맡고 있다는點을 考慮할때 國立公園業務는 山林廳으로 移管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自然公園管理를 山林廳이 管掌해서는 안된다는 反對理論을 展開하는 內容인즉은 公園에는 樹木管理뿐만 아니라 各種遊樂施設 軌道 또는 道路網등을 設置하기 때문에 山林部署가 맡는것이 不適合하다는 理論이 있지마는 遊樂施設은 環境林業에 從屬된 工作物이요 軌道니 道路網設署는 山林土木에서 專門으로 다루는 일들이다.

또 海上公園은 水産分野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理論이 있지만 이는 陸地公園에 比하면 그 面積이 적다.

지금 世界的인 林業思潮가 山에서 나무도 生産하고 山林을 休養林, 自然學習林및 樹木園등을 連繫的으로 運用하는것이 그 傾向이다.

때마침 우리나라도 今年 1月에 公布된 改正 山林法에서 이와관련된 休養林 樹木園造成등에 관한 規定이 넣어져 있으므로 公園의 機能과 脈을 같이하는 이들 自然休養林이나 樹木園을 公園과 連繫運用할 수 있는 계기가 充分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現在와 같이 같은 山林을 놓고 建設部와 山林廳의 二元管理體制에서 오는 不合理하고 非生産的인 管理體制를 是正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할것이다.

지금과같이 自然公園管理가 山林의 自然生態界의 維持增進과 林地의 生産性提高등은 전연 考慮되지 않은채 入場客管理나 쓰레기 치우기에 急急하다면 自然公園管理 本來의 뜻에 符合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내 몫은 내게 다오

내산 내가 가꾸워 푸른숲 이룩되니
국립공원 지정하여 입장료 받아가네
당신이 淸人이면 나는 곰이련가

– 國立公園으로 編入된 私有林